

사립유치원 회계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김미옥** · 차상권***

〈요 약〉

현재 사립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제11조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라 유아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할 때, 동 규칙을 실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유치원의 설립형태를 기준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적용에 대한 쟁점의 원인을 파악하고, 형식과 실질의 차이에 따른 정부와 사립유치원의 보조금과 지원금에 대한 인식차이를 고찰하며, 2020년 3월 1일부터 전면 도입된 K-에듀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지원을 하는 정부 입장에서의 해결방안과 사인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법인격이 없는 유치원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회계실체로 간주하여 유치원 설치와 구분경리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익성과 사인 재산의 투자라는 경제적 실질을 잘 조화시켜 줄 수 있는 재무회계 규칙을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지원금과 보조금이 가장 주된 수입인 사립유치원에서 두 계정이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감독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원금과 보조금의 구분을 달리할 필요가 없거나 두 용어가 명확하게 운영되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과 지원금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K-에듀파인의 회계 지원과 투명한 회계정보를 산출한 유치원에 ‘회계인증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립유치원 회계정보의 표준화된 운영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중 사인유치원은 독지가의 출연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개인 자산이며, 다만, 교육행정편리 상 학부모 지원금을 직접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개인 자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적립금의 계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사립유치원 회계, 비영리회계, 에듀파인, 국가회계시스템

* 본 연구에 유익한 심사의견을 주신 익명의 두 심사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 가톨릭대학교 글로벌경영회계학부 세무회계금융학과 조교수, oki8383@catholic.ac.kr, 주저자

*** 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 sgcha01@daum.net,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21년 8월 6일 1차수정일 2021년 8월 26일 2차수정일 2021년 10월 24일

게재확정일 2021년 10월 24일

I. 서 론

교육정책은 국가의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된 만큼 중요한 과제이며, 미래 국가경쟁력을 위해 서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초·중등교육과 달리 공공성의 관점에서 상당한 논의가 진전되었는데, 그 이유는 초·중등교육의 경우 의무교육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유치원 교육은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사립유치원)에 의존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하봉운 2020).¹⁾ 1980년대 유아교육 분야에 대한 수요를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어느 정도 일임하였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정영기 2019).²⁾ 실제로 1981년 861개였던 사립유치원은 1987년 3,233개로 증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유치원 시설과 유치원 운영인의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유치원비에 관한 규정도 두지 않았다³⁾. 즉 사립유치원의 양적 팽창이 이뤄졌던 시기다.

2012년 「유아교육법」의 개정으로 무상유아교육 기간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으로 전면 확대되면서 유아에 대한 국가 지원(누리과정 지원)이 시작되었다.⁴⁾ 유아교육 공공성을 신속하게 높이는 방안으로 정부는 재정지원으로 민간시설을 낮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그러던 중 2018년 10월 국정감사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유치원의 설립과정과 설립 형태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의 사욕에 의한 비리로 간주 되었다. 이를 규제할 목적으로 정부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였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책임성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 책임성을 높일 목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였다. 2019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200명 이상 유치원을 대상으로, 2020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되었다.

에듀파인은 교육기관에 관한 국가의 회계 관리 시스템이다.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서 예산과 결산에 관한 정보를 모두 다루기 때문에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보았다. 2019년 이전에 에듀파인은 국(공)립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사용하였다.

이는 영세한 사인(私人) 사립유치원⁵⁾에도 사립학교와 같은 수준의 회계처리와 투명한 지출

-
- 1)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전체 원아 수의 70.8%가 사립유치원에 속하고 있으며, 이윤진(2020)은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사립유치원에서 사인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72%에서 86%로 증가하였음을 제시하였다.
 - 2) 1981년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거론한 뒤, 동년 12월에는 현재의 「유아교육진흥법」이 신설되었다.
 - 3) “사립유치원의 ‘좋은 시절’은 가고”, 2017.09.15. 시사IN
 - 4) 누리과정이란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통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이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학비와 보육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누리과정 지원’이라고 한다.
 - 5) 2019년 교육부 보도자료에서 200명 이상의 원아가 재원(在院) 하는 사립유치원은 581개 원이며, 사립유치원 중 법인의 형태가 508개임에 비추어 볼 때 대다수의 사인유치원의 규모는 작음을 유추할 수 있다.

및 관리가 요구되는데,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의도와 관계없이 회계 부정으로 간주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비록 재정지원과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와 책임성 강화는 반드시 요구되지만,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회계제도에 관해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본 연구는 이와 관련된 쟁점 사항을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사립유치원 회계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제시하고 제Ⅲ장에서 유치원 현황을 요약한 후 제Ⅳ장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쟁점 사항을 분석한다. 제Ⅴ장은 쟁점 사항별로 정책을 제안하고 제Ⅵ장에서 연구 결과를 요약한 후, 연구의 한계점을 서술하였다.

Ⅱ. 우리나라 유아교육 및 유치원 현황

1. 유아교육 예산 및 유치원 현황

2021년 교육부의 예산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76조 4,645억 원이다. 이 중 교육 분야는 70조 9,707억 원인데, 이를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으로 구분하였을 때,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가 58조 6,375억 원으로 가장 크다. 특히, 그중에서도 유아교육 보육료 지원은 3조 9,168억 원이다.⁶⁾ 이는 국가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매우 비중 있는 항목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나아가, 국가에서 유아교육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유아교육이 기초교육으로써 형평성에 맞게 모든 유아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틀을 구축함에 지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례로 “대전의 경우 모두 2019년 158개의 사립유치원 중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유치원은 19개 원이며, 이 중 46개 원은 80명 이하의 영세 유치원이다.

6) 물론, 이 이외에도 지자체로 내려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유치원으로 이전되는 예산이 있다.

〈표 1〉 2021년 교육부 예산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감(B-A)	
	본 예산	추경예산 (A)		금액	%
총 지출	773,871	757,317	764,645	7,328	1.0
교육분야	723,166	706,612	709,707	3,095	0.4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604,126	588,112	586,375	△1,737	△0.3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3,722	535,112	532,300	△2,812	△0.5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40,316	39,900	39,168	△732	△1.8
– 고등학교 무상교육	6,594	6,460	9,431	2,971	46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	—	943	943	순증
• 고등교육부문	108,331	108,286	111,455	3,169	2.9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40,018	39,950	39,946	△4	△0.01
– 대학혁신지원	6,951	6,694	6,951	257	3.8
– 4단계 두뇌한국21사업	3,840	3,768	4,216	448	11.9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3,689	3,606	4,306	700	19.4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1,080	1,080	1,710	630	58.3
• 평생직업교육부문	9,383	8,906	10,534	1,628	18.3
–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1,107	739	1,669	930	125.8
– 전문대학혁신지원	3,908	3,884	4,130	246	6.3
–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135	164	259	95	57.9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34	34	74	40	117.6
교육일반 부문	1,326	1,308	1,343	35	2.7
사회복지분야	50,705	50,705	54,938	4,233	8.3
• 기초생활보장	1,016	1,016	1,030	14	1.4
• 공적연금(사학연금기금)	49,689	49,689	53,908	4,219	8.5

출처 : 2021년 교육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국가에서 보조금의 형태로 교육 및 보육료를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비중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⁷⁾ 그러나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해를 거듭할수록 보육대상 아동의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6년 704,138명에서 2020년 612,538명으로 약 15%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나 경제적인 이유가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신윤정 2008).

〈표 2〉 연도별 유치원 및 보육대상 현황

연도		계	3세 이하	4세	5세	6세이상
2020	계	612,538	150,199	220,658	241,396	285
	남	310,361	75,418	111,693	123,101	149
	녀	302,177	74,781	108,965	118,295	136
2019	계	633,913	159,232	224,750	249,538	393
	남	320,848	79,695	113,854	127,081	218
	녀	313,065	79,537	110,896	122,457	175
2018	계	675,998	163,885	231,844	279,830	439
	남	342,497	82,055	117,436	142,759	247
	녀	333,501	81,830	114,408	137,071	192
2017	계	694,631	161,172	256,361	276,297	801
	남	352,561	80,878	130,110	141,149	424
	녀	342,070	80,294	126,251	135,148	377
2016	계	704,138	174,907	253,076	275,523	632
	남	358,961	88,055	128,873	141,714	319
	녀	345,177	86,852	124,203	133,809	313
2015	계	682,553	172,114	249,197	260,544	698
	남	349,481	87,016	127,862	134,216	387
	녀	333,072	85,098	121,335	126,328	311
2014	계	652,546	156,097	228,129	267,576	744
	남	334,396	79,182	116,844	137,945	425
	녀	318,150	76,915	111,285	129,631	319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출처 : <https://kess.kedi.re.kr/index>)

<표 3>에 제시한 인구수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 12월 기준, 전체 미취학 영유아 인구수 대비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73.1%이다. 살펴보면, 0세 20.2%, 1세 81.1%, 2세 91.3%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이용 대상인 3~5세의 경우, 각각 90.0%, 90.2%, 90.4%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표 3〉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연령별 영유아 수(2019년 기준) (단위 : 명, %)

구분	인구수 (A)	어린이집 (B)	유치원 (C)	계 (=B+C)	비율 (=B/A)	비율 (=C/A)	비율 (=(B+C)/A)
0세	626,102	126,216		126,216	20.2		20.2
1세	362,900	294,242		294,242	81.1		81.1
2세	412,018	376,041		376,041	91.3		91.3
0-2세	1,401,020	796,499		796,499	56.9		56.9
3세	444,102	240,429	159,232	399,661	54.1	35.9	90.0
4세	440,483	173,715	224,750	398,465	39.4	51.0	90.4
5세	441,362	148,832	249,538	398,370	33.7	56.5	90.2
3-5세	1,325,947	562,976	633,520	1,196,496	42.5	47.8	90.2
0-5세	2,726,967	1,359,475	633,520	1,992,995	49.9	23.2	73.1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출처 : <https://kess.kedi.re.kr/index>)

〈표 4〉에는 설립유형에 따른 유치원 수를 제시하였다.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참고적으로 전국 유치원의 수는 총 8,705개이며, 경기도 다음으로 서울, 경북, 경남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표 4〉 설립유형별 유치원 수

구 분			총 계
합계			8,705
국립			3
공립	소계		4,973
	단설		460
	병설		4,513
사립	계		3,729
	법인	소계	508
		학교법인	135
		사단법인	33
		재단법인	331
		사회복지법인	9
		기타	—
	개인		3,221

특히, 2020년 기준 총 612,538명의 유아 중 433,637명(70.8%)이 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사립유치원의 역할은 매우 지대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은 사립의 형태가 지배적이다.

2. 우리나라 유아학비 지원제도

유아학비란 만 3세~5세 사이의 유아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공통교육과정 교육비를 가리킨다. 2012년 이전에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계층의 차이가 있었으나 현재는 소득에 상관없이 국가에서 지원한다. 유아학비는 ‘바우처(voucher)’ 형식으로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에서 결제한다.⁸⁾ 바우처 형식은 사회서비스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인데, 여기서 사회서비스란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이다.⁹⁾ 이러한 사회서비스 지원방식은 기존의 공급자 지원방식인 것과 달리, 수요자 지원방식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허위 혹은 부당 과다 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공급기관 간 경쟁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널리 이용되는 방식이다.

유아학비는 지원금이다¹⁰⁾. 이 지원금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교육과정 지원금, 방과후과정 지원금, 그리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으로 구성된다. 교육과정 지원금은 2021년 현재 260,000원(사립유치원 기준, 국공립유치원은 70,000원)으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¹¹⁾ 방과후과정 지원금은 사립유치원 기준 70,000원(국공립유치원은 50,000원)이다. 방과후과정 지원금은 유치원 정규교육과정 이후의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에게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 지급되는 것으로 100,000원이다.

8) 바우처 제도란 정부가 재정수요자(보호자)에게 쿠폰(coupon)을 지급하여, 원하는 공급자(유치원)를 선택하도록 하고, 공급자(유치원)가 수요자(보호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do?p_sn=1

10) 유아학비지원시스템 e-유치원(<https://www.childschool.go.kr>)에는 유아학비 지원금으로 안내되어 있다.

11) 유치원비가 교육과정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액이 된다. 본인 부담액이 발생하는 것이 수요자 지원방식의 특징이다.

III. 사립유치원 회계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본 연구와 그 결을 같이하는 사립유치원 회계제도에 관하여 쟁점을 논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관되게 사립유치원 회계에 사립학교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이 타당한지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노희천 등(2021)의 연구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의 회계제도에 관하여 유아교육법에 명시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는 결국 사립유치원의 특성이 반영된 회계제도나 기준이 미비한 실정임을 지적하면서 현재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이 사실상 회계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어,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 사립유치원 회계가 명확하게 법에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표준화된 회계도 없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동 연구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재정지원 형식인 바우처 방식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배를 받지만, 지원금은 그렇지 않기에 지원금의 반환기준을 만든다면 지금보다 더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정영기(2019)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동 연구에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사인(私人)유치원 형태에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사인(私人)유치원의 경우 학교법인과는 달리, 생계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법인과 같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할 만큼의 재정 및 운영구조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정영기 2019).

이외의 사립유치원 회계제도에 관한 조사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학춘(2017)의 연구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사립유치원 건물 시설 사용료에 대한 교육부와 사립유치원의 인식 차이를 설명하면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립유치원 구분 회계시스템’ 도입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적용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과 같이 사립유치원을 위한 재무·회계 특례규칙을 제정하여 사립유치원의 구분 회계시스템의 도입, 감가상각비 및 적립금의 인정, 시설사용료 등을 인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신하영과 김수경(2016)은 사립유치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갈등 유형을 유아교육 대상의 교육갈등,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와 교육부 간 민관 갈등, 사학기관으로서의 자율성과 교육기관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책무성 간의 가치 갈등으로 분석하면서 사립유치원의 사적재산 여부, 사립유치원 재정구조의 특수성, 차입금과 적립금 등을 쟁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갈등 대상 간 주장을 일부 수렴하여 협상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무회계 규칙 제정의 요구를 주장하였다.

김은설(2015)은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유치원의 공공성과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 관리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실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책 제언으로는 회계 담당 전담인력 배치

의 지원, 회계담당자에 대한 업무 관련 교육 강화, 예·결산 양식의 표준화와 매뉴얼 보급을 통해 실제 예·결산과 정보공시 내용이 일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영기(2019)는 사립유치원에 적절한 회계기준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유치원 회계세입, 세출 과목을 수정 보완하여 기본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와 운영수지보고서로 연계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선행연구 및 법규 및 규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적정수준의 대안적 방안을 제시하였고 현재 사립유치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유치원 설립 시 법인유치원으로 제한하며 재정 지원, 건축적립금 적립비율 우대와 같이 사립유치원 법인화 유도방안을 주장하였다.

하봉운(2020)은 2012년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아 무상교육 기간이 확대(1년 → 3년)되고 그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금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어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음을 제시하였다. 즉, 개인 사립유치원에 의존하였던 유아교육이 유아교육법 개정과 재정지원의 증가로 공공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자 정부는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의 제정과 K-에듀파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정책 제안으로 사립유치원의 설립 형태에 따른 설립 투자 자본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유치원 회계 쟁점의 시작이 되었으며 정부와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식 차이, 회계교육과 지원강화 방안, 유치원 설립자본과 관련된 회계처리 및 계정과목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V. 사립유치원 회계에 대한 쟁점사항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적용의 타당성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하면 법인(法人)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 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으며¹²⁾, 사립학교법 제2조에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역시 사립학교로 규정하고 있다.¹³⁾ 이

12)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 시설을 설립·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 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와 같은 맥락에서 사립유치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립유치원은 사학기관이기 때문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해야 하지만, 재무보고에 필요한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내용은 없다는데에 문제점이 있다(정영기 2019).¹⁴⁾ 이러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에의 분쟁의 소지가 초래될 수 있다.

첫째, 2019 회계연도부터 정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한 K-에듀파인을 원아 수가 200명 이상인 유치원을 대상으로 도입한 후,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였다. 200명 이상인 유치원 수는 2019년 교육부 보도자료 기준, 581개이며¹⁵⁾, 200명 이상의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수를 고려하였을 때 매우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총 8,700여 개의 유치원 중 581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아 수가 현저하게 적다. 이는 유치원에서의 회계 담당 인력의 부재 및 관련 지식 습득의 문제로 이어지며 나아가 공시는 투명하게 되더라도 공시된 자료의 신뢰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초기 단계에 시범적 표본으로 삼았던 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의 대표성¹⁶⁾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면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¹⁷⁾.

두 번째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적용되는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는 것¹⁸⁾에 반해 사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개인 사업자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회계정보의 필요성이 가장 고조되는 일련의 환경 즉, 대리인비용이 나타나거나 정보비대칭이 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사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은 다소 지나친 규제라 비춰질 수 있다. 이는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실익이 작다.¹⁹⁾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사학기관의 규모와 비교하더라도 같은 수준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은 오히려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켜 교육의 질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 14) 그렇기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다. 회계기준이 일원화, 표준화되어 있다면 시도교육청별로 매뉴얼을 만들지도 않아도 될 것이다.
- 15) 보도자료에 나타난 581개의 유치원 수는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16)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문제 되었던 기관 형태나,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제고의 중심에는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사인(私人)이다.
- 17) 전면 도입이 시행된 첫해인 2020년에 일부 사인(私人) 사립유치원에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정보의 작성 능력 부족으로 인해 유치원 상주직원이 입력해야 함에도 회계(세무)법인 직원에게 이와 관련된 업무 대행을 시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경기일보, 2021.10.13. “에듀파인 전면 도입하자 횡령 등 불법 행위 만연”).
- 18) 사립학교법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제4항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 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19) 이 부분에 대해 유익한 심사의견을 주신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세 번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전제하고 한다(정영기 2019 ; 노희천 등 2021). 그러나 사인 사립유치원은 영리성이 존재한다. 사인 사립유치원의 기본재산은 모두 설립자의 소유다. 즉, 기존의 학교법인과 같이 적용될 수 없는 소지가 있다.

2. 보조금과 지원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우처 형식으로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3가지다.²⁰⁾ 그러나 <표 5>에 제시된 사립유치원의 세입예산 과목을 보면 ‘관’의 첫 번째 항목인 ‘보조금 및 지원금’을 보면 공통과정지원금, 방과후과정운영보조금, 인건비보조금, 자본보조금, 및 일반운영 보조금 등 5가지로 구성된다. 이는 현재 공식적으로 e-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결산서의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교육과정 지원금 vs. 공통과정 지원금), 지원금이 보조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어 있음(방과후 과정 지원금 → 방과후 과정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다²¹⁾.

<표 5> 세입결산서 사례 : A유치원

(단위 : 천 원)

과 목				예산액	수납액	미수납액
관	항	목				
1	보조금 및 지원금	1	공통과정지원금	475,200	470,693	4,507
		2	방과후과정운영 보조금	142,800	142,483	317
		3	인건비 보조금			
			1 국가보조금	0	0	0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0	0	0
			3 교육청보조금	0	5,354	-5,354
		4	자본 보조금			
			1 국가보조금	0	0	0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00	300	0
			3 교육청보조금	0	2,340	-2,340
		5	일반운영 보조금			
			1 국가보조금	0	0	0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0	0	0
			3 교육청보조금	0	6,720	-6,720

20) 앞서 소개하였으나 독자의 편의상 다시 언급하면, 교육과정 지원금, 방과후 과정 지원금,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이다.

21) 본 연구에서 쟁점으로 여기는 보조금과 지원금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표 5〉 세입결산서 사례 : A유치원 (계속)

과 목				예산액	수납액	미수납액
관	항	목				
2	수익자부담수입	1 교육비	1 입학금	0	0	0
			2 일반 교육과정비	356,400	352,272	4,128
		2 방과후과정비	1 방과후교육·돌봄비	0	0	0
			2 방과후특성화비	0	0	0
		3 급식비·간식비	1 일반급식비·간식비	107,935	106,764	1,171
			2 특별급식비·간식비	0	0	0
		4 그 밖의 수익자부담수입	1 현장체험학습비	0	0	0
			2 통학차량이용비	0	0	0
			3 졸업앨범비	0	0	0
			4 그 밖의 교육활동 수익자부담수입	0	682	-682
3	설치·경영자 이전수입	1 설치·경영자 이전수입	1 설치·경영자이전수입	0	0	0
4	차입금	1 차입금	1 단기차입금	0	0	0
			2 장기차입금	0	0	0
5	적립금이전수입	1 적립금이전수입	1 적립금이전수입	0	0	0
6	잠수입금	1 잠수입금	1 이자수입	3	2	1
			2 행정활동수입	0	1,560	-1,560
7	기부·후원금수입	1 기부·후원금수입	1 기부·후원금수입	0	7	-7
8	지연수납수입	1 지연수납수입	1 지연수납수입	3,368	2,958	410
9	전년도이월금	1 전년도이월금	1 이월사업비	0	908	-908
			2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0	0	0
			3 순세계잉여금	0	0	0

출처 :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

보조금(補助金)은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개인 또는 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적인 혜택을 가리킨다.²²⁾ 보조금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자금이 잘 집행되었는지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 반면에 지원금은 용어 그대로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그 지원금이 어디에 혹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묻지 않는다. 마치 코로나 사태에 정부에 시행

22) <https://ko.wikipedia.org/wiki/%EB%B3%B4%EC%A1%B0%EA%B8%88>

한 재난지원금과 그 의미가 같다. 전국민에 지원금이 지급하는데 국민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통장에 저금하거나 혹은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인지 굳이 묻지 않는다. 즉, 성격이 상이하다.

공통과정지원금(교육과정 지원금)이란 만 3~5세 어린이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교육과정(누리과정)의 수혜를 위해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혹은 보육료)의 일부를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다.²³⁾ 이 지원금은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직접 입금된다.²⁴⁾

교육과정 지원금(<표 5>에서는 공통과정지원금)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와 이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이며, 방과후과정비²⁵⁾와 함께 매월 지급된다. 단, 유아학비에서 방과후과정비로 이용은 불가하다.²⁶⁾

유치원은 유아학비 수령을 위하여 원아의 출결사항을 e-유치원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유아의 자격을 확인 후, 분기별로 정산할 수 있으며, 방과후과정비는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원아가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경우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방과후과정 운영보조금은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방과후과정지원금’로 불리는 것이다. 방과후과정 운영보조금으로 명명하고 있으나 2021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는 ‘지원금’이라는 표현으로 이 지원금의 형식을 띄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조금 수준의 통제가 이뤄지는 계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원금인지 보조금인지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요구된다.

3. K-에듀파인 도입과 운영

K-에듀파인의 도입 전과 도입 후 약 1년이 지난 현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유치원의 K-에듀파인은 기존 초·중등학교와는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사전 조율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도 취지에 대한 이해와 관련 교육연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입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 김남연과 김명정(2021)에 따르면 K-에듀파인 업무담당자의 약 64.4%가 관계당국의 사전 준비가 불충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약 45.5%가 K-에듀파인의 도입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K-에듀파인 시스템 매뉴얼과 지원서비스가 있더라도 유아교육과정의 현재 회계과목으로는 K-에듀파인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김남연과 김명정(2021)에 따르면 업무

23)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라는 명목의 국가보조금이 있다. 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기초로하여 1999년부터 시작된 국가보조금이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치원 원아에게 지급되는 것과는 다르다(한국재정정보원 2018).

24) 『2021년 유아학비 지원계획』, 교육부 2p.

25) 유치원 자원봉사자 지원비, 야간돌봄유치원 운영비, 장애유아 특기적성교육비를 포함한다.

26) 『2021년 유아학비 지원계획』, 교육부 7p.

담당자의 약 30% 이상이 K-에듀파인의 사업별 예산제도의 이해 수준이 보통 미만이며 예산사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K-에듀파인 시스템의 업무담당자의 지속적 회계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도입취지가 흐려질 가능성이 높다.

V. 정책적 제언

1. 사립유치원 회계(규칙) 제정의 필요성

2020년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었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과 「지방재정법」이 연계되도록 법률체계를 구성하였으나(노회천 등 2021), 사립유치원의 경우 실무규정에 근거하여 회계 관리가 수행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²⁷⁾

재정지원을 하는 정부 입장에서의 해결방안과 사인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법인격이 없는 유치원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회계실체로 간주하여 유치원 설치와 구분경리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익성과 사인 재산의 투자라는 경제적 실질을 잘 조화시켜 줄 수 있는 재무회계 규칙을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보호자가 사립유치원(회계 제도)에 바라는 것은 회계정보가 교육의 질이 반영된 정보일 것이다. 따라서, 학부모가 받은 보조금이나 지원금의 사용이 실제로 내 아이에게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 혹은 유치원의 원아의 수가 많아 유아교육의 질이 낮지는 않은지에 대한 정보를 회계정보를 통해 파악하고 싶은 것이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 산출된 회계정보가 공시되어도 이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회계정보를 통해 교육의 질을 파악하는 방안으로써 정책적 방향성을 바꿀 필요가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해관계자인 보호자의 관점이 고려되었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명확한 지원금과 보조금의 운영

세입결산서 상 공통과정 지원금과 방과후과정 보조금은 지원금과 보조금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모두 지원금이다. 지원금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7) 전국의 시도교육청별로 매년 “알기 쉬운 사립유치원 회계실무”와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이 발간되고 있다.

첫째, 수혜자가 유치원이 아닌 보호자이다. 둘째, 서비스 공급자인 유치원이 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 보조금과 지원금이 유치원 원비를 전액 보조가 아닌 일부 지원이라는 점에서 지원금의 성격이 강하다. 실질적으로 유치원에서는 두 지원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동일한 시스템에 동일한 과정을 통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원금이지만 통제 수준은 보조금과 같다.

바우처 형식의 ‘지원금’ 형태로 정부에서 교육 서비스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의 질의 제고에 있다. 보호자(수혜자)가 직접 서비스제공자(유치원)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제공자가 보호자를 유치하기 위해 더 나은 교육과정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예로 들 수 있다. 훈련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는 자부담하며, 훈련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교육과정 지원금과 방과후 과정 지원금의 방식과 같다. 유치원 원비를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²⁸⁾. 앞선 ‘국민내일배움카드’와는 달리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해 지원금을 보조금의 형식으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한다면 지원금은 보조금이라는 명칭으로의 수정이 되어야 한다.

3. K-에듀파인 운영의 내실화 제고방안

2020년 K-에듀파인이 전면적으로 도입된 후, 전국의 3,801개의 유치원은 예·결산을 포함한 수입 지출 정보를 모두 국가 회계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전자적인 데이터 등록하게 되므로 담당 시·도교육청에서는 체계적으로 계정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고, 시계열적 혹은 횡단면적 데이터의 변화를 통해 탄력적인 재정지원과 정책의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도입이 결정되었으며, 도입 후 2년이 지난 현재,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안정적인 K-에듀파인의 운영을 위해 2가지의 운영상의 개선점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적극적으로 사인 사립유치원의 회계 컨설팅이 이뤄져야 한다. 재무적 측면에서 체계적인 교육 정보가 축적되는 K-에듀파인은 규모나, 설립형태에 상관없이 유치원 입장에서 업무 효율성과 회계 투명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K-에듀파인의 도입을 정부, 서비스 공급자(유치원), 서비스 수요자(보호자)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도입의 방법과 그 시기에 있어서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전술한 바와 같이 나타났다. 거부감을 낮추고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제도 정착을 위해 회계교육과 컨설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컨설팅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은 공인된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K-에듀파인

28)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에는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에 등록해야 할 유치원에 대한 적극적인 공인회계사 혹은 세무사의 접근이나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인(私人) 유치원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이 모두 설립자 개인의 것인 일반 개인 사업자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기본재산의 관리와 회계처리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로부터 컨설팅, 혹은 사무위임 계약을 하게 되면 사인 사립유치원에 상근하는 직원이 아닌 자가 개인정보에 접근하게 된다는 이유로 교육청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그 근거로 「전자서명법」 제23조를 기초로 하고 있으나 이는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접속을 위해 전문자격을 갖춘 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된 전문가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에서 규정하는 ‘전문가와외의 사무위임계약’에 해당이 된다.²⁹⁾ 만약 공인회계사와 사무위임계약을 하는 사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보호자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으면 된다. 사무를 수입하는 공인회계사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20조에 의거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의 유출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세입 징수와 지출 명령은 원장 혹은 원장이 위임한 원감, 혹은 행정직원으로 되어 있으나, K-에듀파인에 입력하는 것은 ‘세입징수’와 ‘지출명령’이 아닌 기장에 가깝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유치원 인증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어린이 활동 환경안심공간”이라는 환경 분야의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며,³⁰⁾ 교육부에서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이라는 시설안전 분야에 관한 인증제를 도입하였다.³¹⁾ 적법한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을 거친 회계 투명성이 높은 사인 사립유치원에 회계 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자와 정부는 직관적으로 관련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 도입을 통해 모범사례와 교육기관 간 정보공유의 확대가 될 것이며, 이는 안정적인 K-에듀파인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4. 추가논의 : 시설·설비를 위한 적립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 주된 쟁점으로 선정하지는 않았으나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유사하게 지적한 사항은 바로 사인 사립유치원의 시설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 때, 사립유치원 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정영기 2019 ; 노희천 등 2021) 혹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은 단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

29) 이 부분은 “유치원 에듀파인 업무, 공인회계사 위탁 왜 가로막나?”의 일부 내용을 준용하였다(출처 : 한국유아교육신문, <http://www.kinde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769>).

30) 환경보건법 제23조

31) 교육시설법 제11조

인다. 이와 동시에 사인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존립과 유지에 관한 보전이 요구된다. 국공립과 달리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당장에 현금지출액만을 운영비로 볼 수 없고 운영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지출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는 일정 기간 이후에 유치원 시설을 새롭게 고치는데 필요하며, 규모를 늘리려는 일반 기업에서의 사업확장적립금과는 달리, 시기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지출을 대비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12년 누리과정 지원금이 생기면서 유치원비의 일부는 정부(지자체)에서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지원금의 유용과 횡령에 대한 우려로 인해 2015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별도 계정에 적립할 수 없게 되었다. 아래에 <표 6>은 A유치원의 사례이다.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항목의 존재 여부와 달리 실제 적립되지 않고 있다. 이는 A유치원의 사례뿐만 아니라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실제 적립금이 계상된 사례는 거의 없다³²⁾.

이는 결국 사립유치원의 영업과 존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한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시작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이 결과적으로는 교육의 질의 하락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학기관으로의 사립유치원을 인정하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면 시설유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치로써 시설구입을 위한 적립 계정을 활성화할 수 있다.

<표 6> 세출결산서 사례 : A유치원

(단위 : 천 원)

과 목			예산액	지출액	잔액
관	항	목			
1	1	교원인건비	1 급여	390,131	403,414
			2 수당	97,644	114,556
			3 복리후생비	18,900	300
			4 법정부담금	50,293	30,942
			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0	0
	2	직원인건비	1 급여	75,540	79,781
			2 수당	4,560	5,120
			3 복리후생비	1,300	0
			4 법정부담금	4,696	5,545
			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5,295	7,469
	3	그 밖의 인건비	1 그 밖의 인건비	29,300	40,784

32) 현행 사립유치원은 세출결산서의 적립금을 통해서만 시설유지보수와 같은 목적으로의 적립이 가능하다(정영기 2019).

〈표 7〉 세출결산서 사례 : A유치원 (계속)

과목			예산액	지출액	잔액	
관	항	목				
2	운영비	1 관리운영비	1 수용비	17,400	51,884	-34,484
			2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22,779	19,989	2,790
			3 연료비	4,200	4,824	-624
			4 여비	0	1,100	-1,100
			5 그 밖의 관리운영비	0	3,096	-3,096
		2 업무추진비	1 일반업무추진비	3,560	1,411	2,149
			2 직책급여업무추진비	3,000	3,000	0
3	일반교육활동비	1 일반교육활동비	1 교사연수·연구비	3,500	2,041	1,459
			2 교재·교구구입비	28,300	1,749	26,551
			3 행사비	33,690	42,831	-9,141
			4 장학금	0	0	0
			5 복리비	2,296	1,400	896
			6 일반급식비·간식비	107,935	107,278	657
4	선택적교육활동비	1 방과후교육활동비	1 방과후교육·돌봄비	4,800	12,000	-7,200
			2 방과후특성화비	47,076	47,736	-660
		2 그 밖의 교육활동비	1 현장체험학습비	15,305	750	14,555
			2 통학차량이용비	32,792	31,412	1,380
			3 특별급식비·간식비	33,048	17,767	15,281
			4 졸업앨범비	0	0	0
			5 수익자부담재원교육활동비	0	0	0
5	적립금	1 적립금	1 적립금	0	0	0
6	상환금	1 상환금	1 단기차입상환금	0	0	0
			2 장기차입상환금	0	0	0
7	반환금	1 반환금	1 보조금반환금	0	0	0
			2 수익자반환금	0	0	0
8	시설·설비비	1 시설비	1 신·증축비	0	0	0
			2 유지비	32,000	12,914	19,086
		2 설비·비품비	1 취득비	3,600	20,497	-16,897
			2 유지비	0	10,949	-10,949
9	지연지출금	1 지연지출금	1 지연지출금	10,000	10,000	0
10	잡지출	1 잡지출	1 잡지출	0	0	0
11	예비비	1 예비비	1 예비비	3,063	0	3,063

출처 :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

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시 투하된 자본을 보전하는 것보다 훨씬 재정투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당사자들의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는 유아에 대한 안전시설이나 교육의 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VI. 결 론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위해 설비 및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본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유치원의 설립형태를 기준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적용에 대한 쟁점의 원인을 파악하고, 형식과 실질의 차이에 따른 정부와 사립유치원의 보조금과 지원금에 대한 인식차이를 고찰하며, 2020년 3월 1일부터 전면 도입된 K-에듀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본 연구는 사립유치원 회계제도에 관한 논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을 추려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 보조금과 지원금의 혼용되는 현재, 그리고 K-에듀파인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꼽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현행 사립유치원 회계제도는 사립유치원의 다수를 구성하는 사인유치원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투명성 제고의 취지가 사인유치원의 규모를 고려한 수용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질적으로 학부모 입장에서 사립유치원에 바라는 회계정보는 결국 교육의 질을 파악하고 싶은 것인데, 학부모가 받은 보조금이나 지원금의 사용이 실제로 내 아이에게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 혹은 유치원의 원아의 수가 많아 유아교육의 질이 낮지는 않은지에 대한 정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김남연 등 2021). 둘째, 지원금과 보조금이 가장 주된 수입인 사립유치원에서 두 계정이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감독 되고 있으며, 지원금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성격이 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용어의 수정이 필요하다. 셋째, K-에듀파인의 회계 지원과 투명한 회계정보를 산출한 유치원에 ‘회계인증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중 사인유치원은 독지가의 출연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개인 자산이며, 다만, 교육행정편리 상 학부모 지원금을 직접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개인 자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적립금의 계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립유치원 회계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회계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였고 사립유치원 회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해 적용가능하고 이해관계가자의 수용성을 높이는 건설적인 제안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써 교육당국과 교육기관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향후 연구에서 사인유치원의 특성을 수행하고 사인유치원의 회계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남연 · 김명정. 2021.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이용 실태 및 담당자의 인식”. 유아교육학논
집 제25권 제3호 : 227-251.
- 김남연 · 김명정 · 김미옥. 2021. “사립유치원 회계에 관한 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연구보고
서.
- 김은설. 2015. “유치원 회계 실태와 개선점”. 2015년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 1-23.
- 김정호. 2017.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규제연구 제26권 제2호 : 97-119.
- 노희천 · 김현숙 · 전규안. 2021. “사립유치원 회계의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제22권 제1
호 : 151-184.
- 신하영 · 김수경. 2016.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의 갈등 쟁점과 대안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제23권 제1호 : 91-111.
- 우명숙 · 박경호 · 전홍주. 2013. “사립유치원 재정운영 현황분석을 통한재무 · 회계 규칙 제정
기준 탐색”. 유아교육연구 제33권 제1호 : 5-30.
- 이학춘. 2017.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감법학, 제36호 : 289
-313.
- 정영기. 2019. “사립유치원 회계 무엇이 문제인가?”. 회계와 정책연구, 제24권 제4호 : 1-28.
- 하봉운. 2020. “사립유치원 재무 · 회계 규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10
권 제10호 : 93-121.

Private Kindergarten Accounting System Issues and Improvement

Kim, Mi Ok* · Sangkwon Cha**

〈Abstract〉

Currently, private kindergartens are subject to the 'Rules on Financial Accounting of Private Schools' because kindergartens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for childhood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Article 2, No. 2 of the Childhood Education Act. Although it may be legally justified, there are difficulties in practical application of this rule in private kindergartens. For example, despite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corporations, they are intended to be applied to private kindergartens, and even after the Kindergarten Act is revised, the terminology is still lacking and is not reflected in the national accounting system(edufine).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ies. First, as the 'Private Schools Act', 'Private School Institutions Financial Accounting Rules' previously applied to corporate private kindergartens, the legal basis for private kindergarten accounting to be applied to individual private kindergarten accounting is unclear. The private kindergarten accounting is manag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the financial affairs manual for private kindergartens of the metropolitan/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legal system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kindergarten accounting for private kindergartens. Second, even if a private kindergarten is a private institution by law, it is operated by individuals and its scale is incomparably small. As a device that can do this, it seems necessary to activate the account of provisions and reserves. Allowing provision such as reserves for facility maintenance or depreciation for buildings or facilities is also a basis for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quality of safety facilities or education. Third, this study allows the establishment of reserves and provisions under the current law, but it has to be accumulated according to the supervision and permission of the head of the provincial and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its use is also limited even if it is intended for the purpose of accumulating and apportioning kindergarten facilities in the future. To realistically improve the situation and at the same time, we propose to introduce accounting educ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for private kindergartens for the smooth operation of K-edufine. In order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the accounting system of non-profit corporations and private kindergartens, which are attracting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Tax, Accounting and Finance, The School of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oki8383@catholic.ac.kr, First Author

** Ph.D The Department of Accounting, Hanyang University, sgcha01@daum.net, Corresponding Author

public attention, it is urgently required to promote an accounting certification system and accounting education course at a renowned professional institution. This study identifies the causes of issues in the application of financial accounting rules for private institutions based on the type of establishment of kindergartens from a macro perspective, and examines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subsidies and subsidies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kindergartens due to differences in form and substance, it i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proposes policies and systems for the stable settlement of K-edufine.

〈Key words〉 private kindergarten accounting, non-profit accounting, edufine, accounting system